붙임	고시문

◎ 국가데이터처 고시 제 2026 - 757호

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(협의)를 고시합니다.

2026 년 11 월 5일

국 가 데 이 터 처 장

---

1. 통계의 명칭 : 부여군노인복지통계

2.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: 충청남도 부여군

3. 통계작성승인(협의)번호 [작성승인(협의)일] : 제700003호 [2019.12.23.]

4.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: 2027.12.31.

5.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: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비고(사유)
작성 및 공표주기	· 2년	· 4년	중장기 변화 및 통계 작성일정 고려